



2022 白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백서
Korea Real Estate Parcel Out Association

2022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Korea Real Estate Parcel Out Association

白書

인사말 ... 04

1

협회현황 ... 05

협회개요 ... 07

조직도 ... 07

발기인 명단 ... 08

협회임원 현황 ... 09

사무국 ... 09

회원사 현황 ... 10

연혁 (2019-2021) ... 24

분과위원회 ... 25

목차

2 사업실적 및 계획 ... 27

1. '21년 실적 ... 29

- 교육사업 ... 29
- 공공성·대표성 강화 ... 31
- 회원사 지원사업 ... 31
- 사무국 체계화 ... 34

2. '22년 사업계획 ... 35

- 교육사업 ... 35
- 공공성·대표성 강화 ... 36
- 회원사 지원사업 ... 36
- 사무국 안정화 ... 36

3 부록 ... 37

- 협회정관 ... 39
- 2018-2021 협회 활동 사진 ... 57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
이윤상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인가(제134호) 사단법인입니다. 우리협회는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활동,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및 지원활동, 회원사 지원·홍보, 및 권익보호, 그밖에 공공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 이외에도 디지털 분양시대를 준비하는 프롭테크 온라인 플랫폼, 광고/홍보 전문회사와 콘텐츠 개발업 영역으로 약 130여개로 확대되어 지난 3년간의 활동이 담긴 뜻 깊은 백서를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협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사 법정교육을 위탁받아 청약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사에 대한 자격기준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양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 및 관련업계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양서비스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도개선 및 회원사간 상호협력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부동산분양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건의를 통해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의 건전화와 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아울러 회원사들의 권익보호 및 부동산 분양서비스 산업의 위상강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

이윤상



1

협회현황

- 협회개요
- 조직도
- 발기인 명단
- 협회임원 현황
- 사무국
- 회원사 현황
- 연혁 (2019-2021)
- 분과위원회



2022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Korea Real Estate Parcel Out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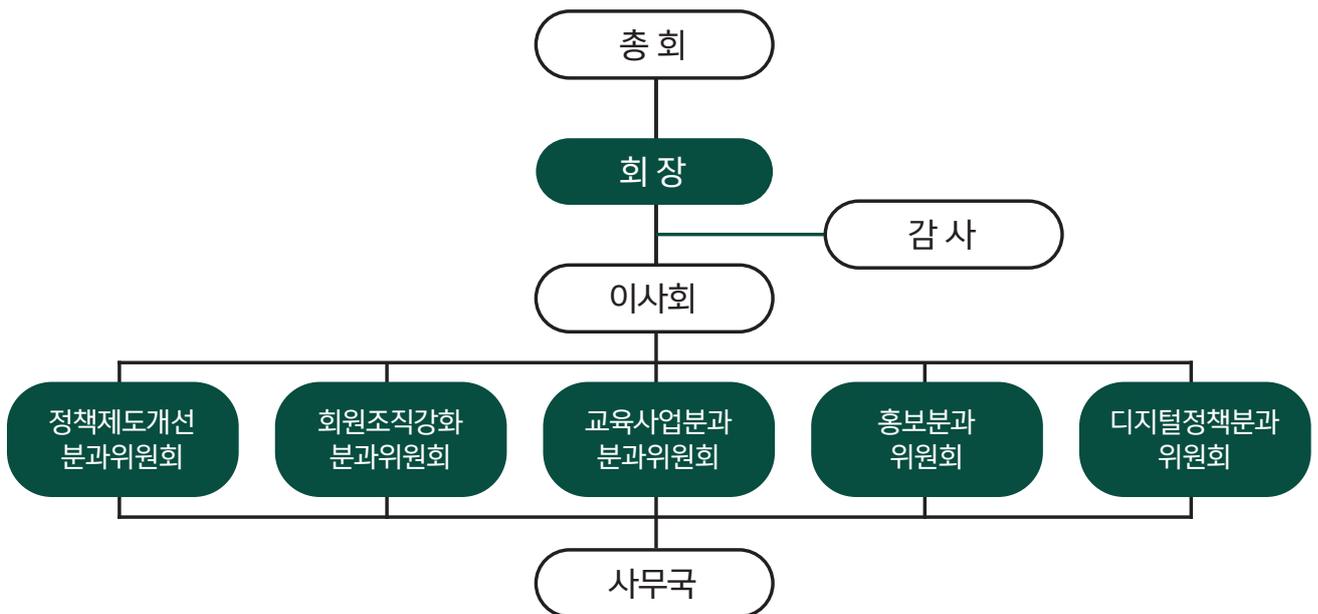
白書

협회현황

협회개요

구분	내용
협회명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	이윤상
설립	2019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 설립허가 제134호)
설립목적	주택법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식산업단지 분양대행 등 부동산마케팅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극복과 제도 개선 및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

조직도



발기인 명단



(주)유성
이윤상 회장



CLK(주)
장영호 대표



도우아이앤디(주)
성정욱 대표



(주)엠비앤홀딩스
심현태 대표



(주)미래인
황근호 대표



(주)건물과사람들
최창욱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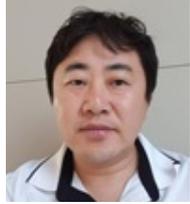
(주)상림디엔텍
임민섭 대표



(주)신림씨앤디
박형남 대표



(주)삼일산업
김선관 대표



(주)유앤아이
김민욱 대표



(주)컬리넨홀딩스
소효근 대표



(주)마켓리더
김용철 대표



(주)한아름
강주택 회장



(주)세원미
조규범 대표



(주)니소스씨앤디
고승일 대표



(주)프런티어마루
김한모 대표



(주)미드미네트웍스
이월무 대표



(주)디엔씨민은
양명환 대표



(주)C&A개발
정명숙 대표



(주)트리플건설
최기만 대표



(주)태풍씨앤디
강창록 대표



(주)원포올디앤씨
조정훈 대표



(주)국진하우징
김국진 대표



(주)팜파트너스
노필성 대표



(주)열림개발
임국택 대표



(주)비에스클로벨
손병석 대표



(주)알이파트너
김창환 대표



(주)산하이앤씨
최성욱 대표



(주)에이치와이마케팅그룹
채영식 대표



(주)세이노
김병주 대표



(주)더감
김진천 대표



(주)코이디에스
이영목 대표



(주)훈민정음디엔씨
허용근 대표



터존(주)
박선주 대표



(주)산단종합건설
채훈 대표



하이랜드(주)
김동기 대표

협회 임원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회 장		이 윤 상	(주)유성
수석부회장	이 사	장 영 호	CLK(주)
부회장	이 사	심 현 태	(주)엠비앤홀딩스
부회장	이 사	최 창 욱	(주)건물과사람들
부회장	이 사	이 월 무	(주)미드미네트웍스
부회장	이 사	조 정 훈	(주)원포올디앤씨
부회장	이 사	김 국 진	(주)국진하우징
부회장	이 사	김 진 현	(주)더감
부회장	이 사	손 병 석	(주)비에스글로벌
부회장	이 사	허 용 근	(주)훈민정음
부회장	이 사	김 선 관	(주)삼일산업
부회장	이 사	채 영 식	(주)에이치와이마케팅그룹
부회장	감 사	황 근 호	(주)미래인
부회장	감 사	고 승 일	(주)니소스씨앤디

사무국

구 분	담당자	업 무
사무국장	조 준 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 업무총괄
정책팀	조 준 환 김 보 영 안 성 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 사업기획 및 개발 총회 및 이사회개최 / 정관 제개정 국토부 연락업무
총무팀	정 원 기 안 성 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결산 업무 협회인장 관리 회비징수-회원사 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업무
교육팀	박 미 희 김 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센터 운영 및 종사자교육 정책·제도개선 기획 정부사업 위탁, 용역과제 연구

회원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회원사가입일 순)

(주)유성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신 증 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서건타워 10층

☎ 031-701-2513

CLK(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장 영 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9, SM빌딩 7층

☎ 02-588-6114

도우아이앤디(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성 정 욱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813호

☎ 02-522-4488

(주)엠비앤홀딩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심 현 태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10층

☎ 02-3486-1006

(주)미래인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정 주 영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8, 동아타워 4층

☎ 02-523-5200

(주)건물과사람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최 창 욱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0, 강남역푸르지오시티 2층

☎ 02-3474-5001

(주)상림디엠텍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임 민 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동 706호

☎ 031-726-3003

(주)신림씨앤디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박 형 남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12, 범아빌딩 601호

☎ 02-572-2300

(주)삼일산업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 선 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506, 아르누보시티 1801호

☎ 02-489-3131

(주)유엔아이디벨로먼트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 준 혁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하남테크노밸리 U1 C동 1111호

☎ 02-842-7773

(주)컬리년홀딩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소호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판교우림W-city 610호
- 02-598-4700

(주)마켓리더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용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48 파크뷰 2005, 2006호
- 031-781-7188

(주)한아름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강주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로드랜드EZ타워 705호
- 031-719-3900

(주)세원미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조규범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대림아크로빌 C-2315, 2209호
- 02-557-0013

(주)니소스씨앤디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고승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A동 2704호
- 031-716-6727

(주)프런티어마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유재석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35, 동양애니메이션빌딩 3층
- 02-3447-4800

(주)미드미네트웍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이월무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3 서진빌딩 3층
- 02-521-3628

(주)디엔씨민은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양영환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3 MJL빌딩 7층
- 02-514-3557

(주)C&A개발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정명숙

-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보정빌딩 503호
- 02-596-8655

(주)트리플건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최기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1020 헤센스마트 L209호
- 032-715-7270

(주)태풍씨앤디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강창록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7 파라다이스오피스텔 1608호
02-323-2964

(주)원포올디앤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조정훈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551 프라자654빌딩 9층
02-3452-2989

(주)국진하우징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국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 분당하우스토리 203호
031-715-1154

(주)팜파트너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노필성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28 지산빌딩 4층
02-533-9400

(주)열림개발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임금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남향빌딩 4층
02-866-0902

(주)비에스글로벌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손병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대림아크로타워 B동 504호
031-478-9100

(주)알이파트너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창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102호
02-553-8640

(주)산하이앤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최성욱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세원빌딩 10층
02-586-5400

(주)에이치와이마케팅그룹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채영식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 W타워 12층
02-2659-0512

(주)세이노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병주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2209호
02-838-2444

(주)더감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진현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9 부림빌딩 2층

☎ 02-546-2633

(주)코이디에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이영목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선유도1차 아이에스비즈타워 304호

☎ 02-6968-1112

(주)훈민정음디앤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허용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83번길 24-6, 2층

☎ 02-401-5564

터존(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박선주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42 갑목빌딩 601호

☎ 02-2055-0045

(주)산단종합건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서성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대로 381 두산베어스텔 605호

☎ 02-587-3400

하이랜드(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동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9 동양빌딩 2102호

☎ 062-956-1004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업종 감정평가

대표자 최종성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83 삼호물산빌딩 A동 2층

☎ 02-2105-6500

라임(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임성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2, 914호

☎ 1599-9493

(주)유당디앤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박창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 SK허브 C-803

☎ 070-7519-4334

(주)씨앤디플래닝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조세윤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302호

☎ 02-588-4858

한국에셋개발(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이재 성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B동 1501호

☎ 02-3452-1800

(주)해안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이 채 관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B동 2011호

☎ 031-711-3218

CRT마케팅(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박 경 동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93 보령빌딩 3층 348호

☎ 010-4084-5142

(주)우원애드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이 혜 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45-41

☎ 031-286-7800

(주)로템에이앤디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손 정 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 4층

☎ 031-8016-9949

(주)와이낫플래닝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박 찬 주

📍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1318호~1323호

☎ 02-6022-8793

(주)혁본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이 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15층 1513호(더퍼스트타워 2차)

☎ 1522-9432

(주)다원인포메이션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 정 훈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19, 4층 417호 한화오벨리스크

☎ 02-6317-3773

(주)대룬디앤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조 운 호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40

☎ 041-551-8911

(주)더조은엠앤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 대 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37 필프라자 903-브이2호

☎ 031-374-4483

더오름(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태인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177번길 21, 801호~803호

☎ 032-324-7002

(주)한맥씨앤디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도현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95

☎ 1566-3810

(주)에스앤제이플랜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손상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15 다이아타워 1685호

☎ 02-2088-8386

(주)루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김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9 서초월드빌딩 1811호

☎ 070-4736-5001

(주)더피알커뮤니케이션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이성규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47 잔양빌딩 7층 서관

☎ 02-6223-5557

(주)드림플러스씨앤디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문만섭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3번길 52 래미안프라자 503

☎ 031-982-7020

(주)영우디앤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조민호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2, 102동 503호

☎ 02-575-3631

(주)와이씨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최영창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21 다산블루웨이 1차 지식산업센터 319호

☎ 031-555-2126

(주)리츠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정희창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6-3 동탄역메가비즈타워 C동 306호

☎ 031-8003-2615

(주)부맥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조도현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리길 11, 103호

☎ 041-563-2223

(주)엠게이츠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신건우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11 정현대지식산업센터1-1비-204호
☎ 02-592-7600

(주)태성피앤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맹동호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70 그레이스힐 B113호
☎ 1566-1284

(주)엔터렘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정남훈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8 하임빌로데오 507-70호
☎ 02-706-9905

(주)문원디앤씨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장순영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현대오피스텔 1723호
☎ 02-707-3447

(주)유티파트너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백석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풀라리스빌딩 703호
☎ 031-714-1221

(주)투비홀딩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박종수

📍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12 청라프라자2 403호
☎ 031-444-0909

BK C&D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문병국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05, 3층
☎ 070-8876-1000

(주)애드파워

업종 광고대행

대표자 천연재

📍 강남구 논현로 164길26 성호빌딩 4, 5층
☎ 02-556-8957

(주)케이엔엘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명선

📍 서울시 종로구 종로66가길 28-7 성일빌딩 310호

(주)리얼투데이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김운철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관 9층
☎ 02-521-5565

(주)스웨이브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신혜연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55길 47

☎ 02-3472-7006

(주)애드락크리에이티브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신화용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16 태양빌딩 3층

☎ 02-543-9713

(주)상가114&브라이트

업종 교육

대표자 최용석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 푸른빌딩 7층

☎ 02-719-7113

(주)위드윈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민병성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42 신방현대프라자 3층

☎ 1666-6343

(주)라온아이엔씨

업종 전시모형

대표자 박정범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81, 402(성수동2가)

☎ 070-4827-2591

(주)다음파트너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이미명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340 대치EM프라자 601호

☎ 02-563-1016

(주)시원파트너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재정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04길 9-7

☎ 02-552-2273

(주)애드에이치큐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한승한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33, 9층

☎ 02-3442-2910

(주)포애드윈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권한욱

📍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엡3차 909호

☎ 02-6399-6363

(주)씨에스엠플랜닝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태연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0길 9, 401

☎ 02-2057-5333

(주)세븐파트너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박상철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34 선인빌딩 4층
☎ 02-6407-7775

(주)빌리프인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황승길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16길 5 경호빌딩 2층
☎ 02-555-7796

(주)코드에이엠씨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익기

📍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보정빌딩 503호
☎ 02-596-8655

(주)리얼탑코리아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배광풍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1412호
☎ 02-539-3410

(주)한강씨앤디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유호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타워워 색션동 1405호
☎ 031-969-9661

(주)더비엠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이병택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11 현대지식산업센터 에이동 1001호
☎ 02-6012-4675

(주)케이제이플래닝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경종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6 하우스디스마트밸리 1동 10층 F1032호
☎ 02-488-2277

지우알엔씨(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최은석

📍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4404호
☎ 051-745-8955

루트이앤씨(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홍기운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1길 41, 남정빌딩 2층
☎ 051-745-8955

(주)에스앤에스파트너스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고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9 KCC 웰츠타워 A동 1603호
☎ 031-703-7031

씨엘디앤씨(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윤준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5 SH스퀘어 119호

☎ 031-375-8849

(주)디아크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강원식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에이동 707호

☎ 1599-4147

더큐브컴퍼니(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김국기

📍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20, 6층

☎ 1670-4453

에드타임컴퍼니(주)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감동진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34 뉴튼프라자 2층

☎ 02-584-3101

(주)맨인씨앤에스

업종 인력공급업

대표자 정창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810호

☎ 02-722-2011

머스트(주)

업종 분양대행

대표자 홍선희

📍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E동 802호

☎ 032-720-5567

(주)올림플래닛

업종 디지털콘텐츠개발

대표자 권재현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561 1,2층 루비나빌딩

☎ 02-555-5215

(주)넥시스

업종 건축자재

대표자 최민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1 태화빌딩 1~4층

☎ 02-3662-1744

(주)까까조

업종 부동산분양플랫폼

대표자 이경재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길 C동 1711호

☎ 02-409-4120

(주)에드프로패셔널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이현철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08, 금강빌딩 3층

☎ 02-512-0719

(주)이지스택

업종 **인력공급업**

대표자 최 증 찬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 다승프라자 948호
- ☎ 032-326-2283

부동산114(주)

업종 **부동산정보서비스**

대표자 이 성 용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타워 10층
- ☎ 031-789-1114

(주)위드알앤씨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오 창 민

- 📍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근신빌딩 2신관 205호
- ☎ 02-6423-2227

아이데코건축(주)

업종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디자인)**

대표자 이 상 우

- 📍 서울 송파구 중대로 317-14 (오금동) 2층,3층
- ☎ 02-3401-1124

(주)알이비에셋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정 은 채

- 📍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3번지 4층(침산빌딩)
- ☎ 02-486-1550

(주)동국이엔씨

업종 **부동산분양플랫폼**

대표자 김 진 현

- 📍 서울 용산구 청파로 271 청아빌딩 303호
- ☎ 02-711-5025

(주)용마홀딩스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강 줄 기

-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7, 1909호(청담역 푸르지오시티)
- ☎ 02-6012-1359

(주)온미래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최 의 형

-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338-44, 101동 403호
(반월동, 신동탄롯데캐슬)

(주)트레이서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고 승 민

-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2길 26, 1층(삼성동)
- ☎ 02-3448-4617

(주)아이콘씨앤디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방 한 준

- 📍 광주 서구 시청로 41, 2407호(치평동, 상무 대우 디오빌)
- ☎ 062-531-6423

(주)도원그룹

업종 시행, 분양대행업

대표자 강은주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33, 업무동 4층(호텔스카이파크인천송도)
- 032-435-5311

(주)더이룸디앤씨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이영준, 이은경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93, 105호(장곡동)
- 031-758-5586

(주)엘이케이산업개발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이은경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1005 씨-2호(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 031-758-5586

(주)콘텐츠민주주의

업종 디지털콘텐츠개발

대표자 김도연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212 문영퀀츠파크11차 401호
- 070-804-3258

(주)미드미디앤씨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방종철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56, 8층 한석타워
- 02-521-3628

(주)에이치엘더블유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권혁우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 9층 (장항동, 교보생명빌딩)
- 02-6929-2129

위세일즈

업종 디지털콘텐츠개발

대표자 김도훈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가산더스카이밸리 1403호
- 02-2067-0091

(주)위뉴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윤점식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현대 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차 A10-0059호
- 031-8027-3892

(주)의성디앤씨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김남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32번길 9, 에이동 3218호 (송도동, 롯데몰송도캐슬파크)

디케이홈스(주)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이건영

- 서울 송파구 법원로 6길 7 유타테크밸리 705호
- 02-470-0727

웰시스템(주)

업종 소방공사업

대표자 김 종 길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C동 1520호

☎ 031-553-0012

(주)도곡닥터스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박 미 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8 몽메르빌딩 11층

☎ 02-561-0177

철인그룹(주)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김 상 진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17층(IT캐슬 2차, 가산동)

☎ 02-859-5757

(주)태성디엔투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김 태 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5길 10-8 2층 209호

☎ 02-581-5840

부동산빅데이터연구소

업종 교육업

대표자 최 봉 현

📍 경기 광명시 충현로16번길 14, 202호 (주)지엠아이앤디

☎ 02-897-4989

KP디지털마케팅(주)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양 석 민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 02-3448-5690

점프컴퍼니(주)

업종 부동산분양플랫폼

대표자 박 희 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팩스 A동 6층

☎ 031-607-4500

(주)이룸원파트너스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이 정 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8(시스모타워, 삼성동)

☎ 02-6339-1951

(주)제이엠피산업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김 중 문

📍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19번길 24, 607호(해운대경보이리소션)

☎ 051-754-0822

케이디씨(주)

업종 부동산개발 컨설팅(PM) 서비스

대표자 장 인 혁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7, 1006호(치평동, 중흥스카이31)

☎ 031-251-2280

(주)디에스그룹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김재석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1004호(금정역SKV1센터)
☎ 031-423-5700

(주)허브파트너스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김현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707호 (여의도동, 라이프콤비)
☎ 02-761-7939

(주)에이치케이산업개발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임강욱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97, 3층 305호 (가락동)

(주)구도디앤씨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문상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 J동 108호
☎ 02-2297-2006

(주)씨알엠소프트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대표자 김치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24길 11-1
☎ 1661-5412

(주)미도리얼코

업종 분양대행업

대표자 이완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1101호
☎ 02-567-1115

(주)윤앤팩토리

업종 도매 및 소매업

대표자 황윤

📍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부천테크노밸리U1센터 1520호
☎ 032-321-4101

(주)와이디커뮤니케이션

업종 광고, 홍보

대표자 김예송

📍 서울시 강변역로4길 68, 리젠트빌딩 501호
☎ 02-2195-3679

■ 회원사 현황

◎ 회원사 총 138개사

● 분양대행업회사 : 107개사 / 광고회사 등 : 31개사

● 광고(17)/디지털콘텐츠(5)/인력공급업(2)/실내건축공사(2)/평가법인(1)/
교육업(1)/전시모형(1)/소방공사업(1)/도매 및 소매업(1)

● 2018년

- 08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사무국 발족
- 10 발기인 총회 (초대 이윤상 회장 취임)

● 2019년

- 0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국토교통부 설립허가(제134호)]
- 07 2019 총회 개최 및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협회 명칭 변경
- 11 국토교통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고시 (2020년 조건부 추가지정)
- 12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송년 워크샵

● 2020년

- 03 코로나-19 후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 04 회원사 가이드북 발간
- 06 협회 백서 발간
- 06 분양대행업(비아파트) 제도화를 위한 국토부 정책간담회 개최
- 10 2020년 제 1차 발기인연석회의
- 12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 지정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20-1089호)

● 2021년

- 05 국토부 주택기금과/토지정책과 간담회
- 06 디지털정책분과위 출범
- 08 인지세 관련 국세청 소비세과 간담회
- 08 (사)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무협약
- 09 2021년 정기총회 개최
- 09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호남지회 개회

분과위원회

구분	주요내용
<p>정책제도개선 분과위원회</p>	<p>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활동 <p>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분양통계정보 홈페이지 제공 및 분양통계를 활용한 정책개발 분양서비스업 건전화를 위한 자율정화위원회 설치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합리적수수료 기준설립 및 업계자율정화 유도
<p>교육사업추진 분과위원회</p>	<p>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 및 청약관련 실무 담당자의 경력관리 및 경력에 따른 생애주기별 협회 교육사업 실시 <p>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상담사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국토부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사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 추진 2020 분양업무 매뉴얼북 제작 분양기획인력 계약학과 운영 (장기) 교육사업을 추진을 위한 분양상담사 DB 수합
<p>회원조직강화 분과위원회</p>	<p>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 권익보호, 친목도모, 및 협회 회원사 확대 및 회원지원 활동 <p>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 확대 (2019년 100개사, 2020년 200개사) 노무서비스 등 회원사 지원활동 협회사 가이드북 제작 회원사 탐방 및 분양현장소개 월례골프회 / 송년워크샵 개최
<p>홍보분과위원회</p>	<p>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 회원사 홍보활동을 통해 회원사 이미지 제고 <p>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 커뮤니케이션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및 각 분과위원회별 홍보 지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뉴스레터, 홈페이지 활성화방안 등)
<p>디지털정책 분과위원회</p>	<p>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디지털, 정책분과위 통합 활성화 디지털마케팅 접목 융복합 사례 발굴 <p>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마케팅 기술을 활용한 회원사 간 비즈니스 융합 및 공동의 이익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간 디지털 마케팅 협력 강화 회원사간 비즈니스 노하우 공유 및 상호협업 촉진 분양서비스업의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롭테크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및 시장발굴 분양서비스업의 서비스 다양화,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마련



2

사업실적 및 계획

1. '21년 실적
2. '22년 사업계획



2022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Korea Real Estate Parcel Out Association

白書

사업실적 및 계획

1. '21년 실적

교육사업

■ 법정교육

- 분양대행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주택공급 업무 및 청약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커리큘럼
- 수도권 및 주요 거점 도시 전국교육 실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교육실시



11월 24일 대구 법정교육



11월 19일 부산 법정교육

- 교육 실시 결과 (2021년 총 1528명 수료)

월	수료인원				계
	서울	대구	부산	광주	
4월	243	-	-		243
5월	92	-	-		92
6월	85	-	-		85
7월	28	-	-		28
8월	-	-	-		0
9월	57	-	-		57
10월	137	61	66		264
11월	97	152	92	99	440
12월	117	94	108	-	319
계	856	307	266	99	1,528

○ 21년 법정교육 세입-세출 총괄

(단위:천원)

세입 ^㉑	세출 ^㉒	세입-세출 ^{㉑ - ㉒}
198,520	117,971	80,549

○ 법정교육 세입

(단위:천원)

구분	계획(18회)	실행(21회)	달성률(%)
총수입 ^㉑	162,000	198,520	80,549122.5

○ 법정교육 세출

(단위:천원)

구분	계획(18회)	실행(21회)	집행률(%)	
㉒ 총지출	강사료	46,800	51,900	110.9
	교재제작비	13,500	14,369	106.4
	교재원고료	1,200	-	-
	수료증제작비	6,750	6,676	98.9
	수강생식대	9,450	11,538	122.1
	강의용품 등	3,600	2,701	75.0
	강의실대관료	18,000	18,654	103.6
	지방출장비	3,000	3,685	122.8
	운영인건비	36,000	2,900	8.0
	마케팅비	9,000	4,068	45.2
	기타경비	5,400	1,480	27.4
소계	152,700	117,971	77.2	

■ 부동산 마케팅 기획자(기획인력) 양성 실무과정

○ 추진배경

- 회원사 기획인력 공급수요 충족
- 분양대행업 등록제 및 분양대행업 전문인력 제도화 기반마련

○ 교육실시결과 : 1기 61명 수료

- 교육기간 : 3주 24H (10/23 ~ 11/06)

○ 세입-세출 총괄

(단위:천원)

세입 ^㉑	세출 ^㉒	세입-세출 ^{㉑ - ㉒}
29,800	16,016	13,784

■ 평가 / 향후계획

- 협회 법정교육에 대한 인지도 강화, SNS 활용 홍보강화 (인스타그램, 블로그, 밴드 등)
- 청약관련 추가 실무강좌 개설 (엑셀/솔루션 활용 청약 부적검 검수) 및 교재출간
- 기획인력 강의 민간자격증화(대학연계), 수료생 회원사 추천 확대

공공성 · 대표성 강화

■ 분양대행업 등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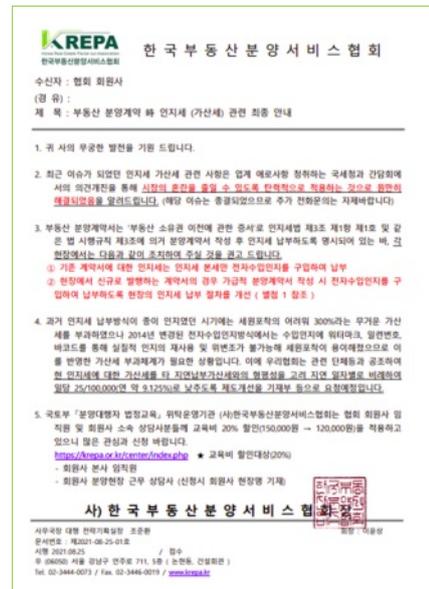
- (비아파트) 분양대행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제도화
 - 국토부 토지정책과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 ('21.05)
 -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흥기원의원 대표발의 ('21. 07)
- (아파트) 분양대행업 자격기준 현실화
 - (아파트) 분양대행사 자격기준 현실화 관련 주택기금과 협의 ('21.11)
- 연구용역 발주 : 주택산업연구원
 - 분양대행업 관련 법제도 검토, 분양대행업의 현황 및 사례조사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동산분양서비스업 등록제 및 자격제도 추진 방안 제시
 -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 타당성 강화

■ 인지세 관련 국세청 의견개진 및 회원사 권고사항 배포 (08/25)

- 인지세 관련 국세청 의견개진
 - (08/10) 국세청 소비세과 정책건의
 - (08/18) 인지세 가산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한국경제)
 - (08/24) 국세청 - 협회 간담회 개최
 - (08/25) 인지세 가산세 관련 최종안내 및 권고사항 배포



보도자료 배포 (08/18)



인지세 가산세 관련 안내자료 배포

■ 분양현장 불법스팸 방지 캠페인 ('21 06.)

- 방송통신사무소와 불법스팸 방지 캠페인 공동진행
 -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를 위한 업무별 표준양식을 협회 홈페이지 제공
 - 불팸스팸 방지 관련 보도자료 배포, 분양대행사 교육내용 반영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무제휴

- 양기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08/30)
 -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업계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및 정책연구, 제도개선 공동 추진



■ 2021 한국경제 집코노미 박람회 참가 (10/01)

- 이윤상 협회장님 행사 VIP 참석
- 행사부스참여 및 보도자료 배포
 - (주)유성, CLK(주), (주)미래인, (주)니소스씨앤디, (주)건물과사람들, (주)미드미네트웍스, 비에스글로벌, (주)부동산114 부스 참여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추진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안건 총회 의결 및 정관개정 ('21.09)

■ 평가 / 향후계획

-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22년 상반기 통과
 - 비주거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주택법 시행령(규칙) 내 아파트 분양대행업 관리육성 방안 제안
- 부동산사업자단체연합회 참가 : 6개 부동산 사업자 단체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지정기부금 단체 연내 지정

회원사 지원사업

■ 디지털 정책분과위 출범 ('21 06)

- 디지털 분과위 운영 (위원장 : 고승일 부회장)



디지털정책분과위 회의 (06.15)

REPA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동기획

[2021년 7월] **선명부동산융합포럼**

주제: 부동산 디지털 마케팅

일시	강연 주제	강연자
제 376회 (7월 06일)	메타버스 시대 부동산시장의 디지털 전환	안호준 이사 비에스글로벌
제 377회 (7월 13일)	카카오 플랫폼 활용 부동산 디지털 마케팅 사례	권혁우 대표 비에스글로벌
제 378회 (7월 20일)	부동산 분양마케팅 빅데이터 활용 사례	남형규 부장 부동산114(사)
제 379회 (7월 27일)	부동산 디지털 마케팅 현황과 전망	고승일 대표 비에스씨앤디

부동산디지털마케팅 공동기획 온라인세미나

- 프롭테크, 빅데이터 등 디지털마케팅 접목한 융·복합 사례 발굴
- 부동산개발협회, 한국프롭테크포럼, 선명부동산융합포럼 등 교류 활성화

■ 회원사 지원

- 회원사 조사 상조물품 / 화환 / 부의금 / 경조기 지원
- 회원사 사업소개 발표회 (이사회 및 디지털분과위) : 점프컴퍼니 외
- 2020 회원사 가이드북 업데이트, 회원사 모바일 수첩 제작 배포
- 노무특강('21.05) 및 노무컨설팅, 「법인세 관련 세무 세미나」 ('21.07.20)
-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직무교육」 관련 업무제휴 협약(07/29)

■ 회원사 의견수렴

○ 협회장 주관 회원사 대표 오찬 간담회 ('21. 7)



(주) 위뉴 (주) 더이클디엔씨, (주) 엘이케이산업, (주)도곡팍터스, (주) 태성디엔투, (주) 문원디엔씨
(주)리얼탑코리아, (주) 도원그룹, 더큐브컴퍼니(주), (주) 씨앤디플래닝, (주) 철인그룹

○ 회원사 방문 및 의견수렴 : CLK, 국진하우징, 와이낫플래닝 외

협회 회원사 방문기

□ 회 품 사 명 : 지우알엔씨 주식회사
 □ 방 문 일 자 : 2021. 11. 19(일) 15:00-
 □ 장 소 : 부산시 해운대구 APIC로 17, 센텀리드스퀘어 44F 지우알엔씨(주) 본사

* 코로나로 회원사 간 모임을 갖지 못하는 관계로 협회와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고, 더불어 업계 관련 및 회원사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글주에는 협회 회원사 지우알엔씨(주)를 방문 드립니다.

* 지우알엔씨 본사 사무실에서 비어본 소문부 (1) * 부산광역시 중 구 201호에 위치한 최우영 박사님 (말번씨), 지우알엔씨 최순재 대표님(가운채) (→)

○ 지우알엔씨(대표이사) 김대환은 부산의 본사, 그리고 서울과 인천에 지사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로 분양대상 (내외국) 분양층 95,854 세대, 도곡스텔 분양 (홈스테이트 도곡엑스트리아1인 매물) 총 약 11,000세대, 상업지(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3차, 4차 등 240,555㎡), 부동산 개발, 컨설팅을 사업분야로 하는 회사로 지회사에서 최근 600여 명의 분양차 무산 개발사 및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 협회 회장 부산 소재 회원사인 지우알엔씨 최순재 대표님에 앞으로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협회 분양대상자 법정교육 >2강 분양대상자 직업교육 및 불문법 주요사례> 강의를 부탁드리면서 부산 법정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산지회를 찾아 주실 것을 계원드립니다.

※ 사무국에서는 현안논의, 제안, 요청사항 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사 방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부산법원교육 : 02-3444-0073 호준환 사무국) 감사합니다.

지우알엔씨 (11월 19일)

협회 회원사 방문기

□ 회 품 사 명 : 주식회사 국정하우징
 □ 방 문 일 자 : 2021. 11. 24(수) 15:00-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로 15, 분당해우소로리 2F ㈜국진하우징 본사

* 글주에는 협회 지원(대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전-충청지역 828 법정교육 250명)을 지원해 주신 주식회사 국정하우징에 방문 드립니다.

□국진한 주택(신도시, 위, 노후나 과잉(주택)) 21년 분양한 당진 센트럴트레드(분류) 현장

○ 우리협회 부회장이 주식회사 국정하우징(대표이사 김국진)은 부산개발, 분양대상, 부동산 개발 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올해 익산 무주지도 대도시를 직접 시행 성공리에 분양 한 바 있습니다.

○ 대전-충청지역 828 법정교육 지원을 해주신 김국진 그리고 노후나 과잉(주택)에서는 협회 교육 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 대전-충청지역 법정교육을 계기로 대전지역 상담사들이 한국부동산협회(부동산협회)를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일정기회를 갖춘 상담사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법정교육을 세분화하여 협회차원에서 분양대상자 민간자격을 발급 도입 및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실무교육(현장 및 계약관리 절차, 청약준비 업무절차, 계약자 관리, 부채관리 권수 등) 과정 개설

* 2022년 1월, 법정교육 강의를 위해 강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협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김국진 부회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빠른 시간을 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노후나 과잉, 그리고 앞으로 교육공로로 강의를 해 주실 강의를 보장받도록도 감사드립니다.

※ 사무국에서는 현안논의, 제안, 요청사항 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사 방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부산법원교육 : 02-3444-0073 호준환 사무국) 감사합니다.

국정하우징 방문(11월 24일)

■ 호남지회 설립 ('21.09)



- 정관개정 및 호남지회설립 (초대 지회장 (주)하이랜드 김동기 회장)
 - 회원사간 상호협력 증진, 권익보호 및 지방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관개정
 - 호남지회 현판식(09/27), 광주-호남지역 법정교육 실시(11/30)

■ 평가 / 향후계획

- 2022 백서 / 회원사 가이드북 업데이트
- 협회 채널 활용 회원사 참여 활성화 (회원사 소개, 분양현장 소개)
- 디지털정책분과위-프롭테크포럼 공동 세미나 추진

사무국 체계화

- ○ 예산회계규정 제정
 - 지출/결의 프로세스 정립 및 회계관련 문서 체계화
- 조직체계화 및 비용 절감
 - 사무국장부재에 따른 조직안정화 : 조직 재정비, 업무분장
 - 업무효율화를 위한 업체 변경 비용지출 절감
 - : 노무컨설팅 서비스 해지 / 회계법인 변경 /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변경

■ 평가 / 향후계획

- ERP 도입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 업무 재분장 및 사무국 안정화
- 홈페이지 안정화 / 활성화

2. '22년 사업계획

교육사업

■ 법정교육

○ 22년 법정교육 32회 실시, 3300명 배출계획

구 분	지역별 수료인원(계획)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	
인원	1,539	396	396	396	297	198	99	3,321

■ 분양기획인력 양성교육

○ 22년 2회 실시, 80명 수료 : 21년 32H → 22년 72H 교육과정 심화

- 회원사 기획인력 교육과정 수료생 추천 확대 : 대학연계

○ 부동산마케팅기획인력 양성과정(대학연계 (안))

교육목표	초급 분양기획인력 양성 및 회원사 취업연계
교육방식	졸업예정자를 회원사가 채용하여 과정 이수 후 취업
교육인원	40명/회 * 2회
교육대상자	부동산학과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교육이수 반영
교육시간 /운영	72시간 (2022년 4월(1차), 10월(2차)) 오프라인 (매주 토, 일) - 핵심이론, 실무실습, 현장실습 (2학기 인턴근무)
교육비	150만원/인 (회원사 전액지원)
모집방식	- 2022-2학기 인턴 근무 출석 대체, 설명회 개최 (22년 3월) - 회원사별 수강생 입사 협약 체결 (회원사 입사여부 결정) - 회원사별 성적우수자 1명 최종 채용방식으로 경쟁심 고취 * 교수 추천, 졸업요건 교육이수 반영

■ 법정교육

과정명	교육대상	연간회수	수료생/회	교육비	교육시간
청약실무 교육*	상담사	2회	100명/회	20만원/인	8H
마케팅 실무교육	상담사	2회	50명/회	25만원/인	12H
일반인 청약교육**	지역주민	2회	100명/회	15만원/인	6H
지주택 실무***	대행사	1회	50명/회	70만원/인	16H

- ◆ 청약실무교육 : 청약 부적격검수 실무, 교육 후 일정기준 점수(시험) 취득 시 수료증
- ◆ 일반인청약교육 : 일반인 청약 당첨 전략 대해부 (한국경제)
- ◆ 마케팅실무교육 : 상담개론, 관련법규, 마케팅전략, 마케팅사례
- ◆ 지역주택조합 : 사업기본지식, 조합운영/관리, 사업분석,마케팅 사례, 법률,세무 이슈

공공성 · 대표성 강화

■ 분양대행업의 관리, 육성방안 제시

-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22년 상반기 통과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용역
 - 주택법 시행령 내 아파트 분양대행업 사후 관리방안
 - 비아파트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록제 및 분양대행업자 교육방안 세부(안)

■ 부동산경제인단체가입 / 한경집코노미 참가

■ 협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

- 정기적 분양 관련 뉴스(컨텐츠) 업로드를 통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

■ 업무제휴

- 부동산산업학회 : 분양대행업 위상정립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CRM 데이터 활용 등
- 사단법인 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 분양대행업 입법지원
- 부동산박사회 : 분양서비스업 연구 활성화

회원사 지원사업

■ 회원사 지원 및 교류 활성화

- 회원사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확대
- 회원사 제공프로그램 다양화
 - 회원사 가이드북 / 협회백서 리뉴얼 배포 / 모바일 회원수첩 활성화
 - 협회 유튜브채널 회원사 분양현장 소개 활성화
- 협회 출범 3주년 '분양마케팅인의 날' 행사 : 회원사 간 네트워킹 기회마련
- 분과위 활성화
 - 디지털 정책분과위 활성화, 산악회 운영
- 지회 활성화
 - 호남지회 활성화, 영남지회 출범

사무국 안정화

■ 업무프로세스 체계화

- 사무국 ERP 도입
- 업무체계 ISO 인증

■ 홈페이지 기능개선

- 홈페이지 기능개선 (분양대행업 실적등록 등 법정단체 인프라 기반 마련)
- 분양통계 기능개선



3

부록

- 협회정관
- 2018-2021 협회 활동 사진



협회 정관

정 관

제정 2019년 5월 16일

개정 2019년 9월 16일

개정 2021년 1월 6일

개정 2021년 11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명칭은 “Korea Real Estate Parcel out service Association”로, 약칭은 “KREPA”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극복과 제도개선 등을 추구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법인은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조직한다.

제4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5층(논현동, 건설회관)에 두며, 필요한 곳에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登記 후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5조(일반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약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현실한 서비스 제공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교육 및 그 이력관리
4.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계의 자율정화 등 이미지 개선 활동
5.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홍보활동
6. 회원의 공동이익과 권익보호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에의 참여
8.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특별사업)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1. 월간지 및 회지의 발행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2.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3. 회원의 상무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4. 기타 법인 운영을 위한 수의 창출사업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로서 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법인업체 또는 개인업체로 한다.
2. 준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부동산 관련단체 또는 건설업체 등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업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와 임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인은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법인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수하는 권리
2. 법인의 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 부동산 마케팅 사업자의 품위유지 의무
3. 회비 및 채부납금의 납부 의무
4. 법인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 직에서 해임된다.

1. 징계처분 등으로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은 때
2. 회원이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회비 납기 기한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정지를 결의한 때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관련 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었을 때
2.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명된 때
3. 회원이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 자격징지 처분을 받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회원의 자격상실 또는 탈퇴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회장과 부회장 5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다) 15인 이내
3. 감사 2인

②회장 1인과 이사 14인, 감사 2인은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가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원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정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③회원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상임이사 1인은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정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다만, 회원이사가 임기 중 정회원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정회원으로부터 면직된 때에는 당해 정회원의 후임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새로 지정하는 자가 잔임기간 동안 회원이사로 보선된 것으로 본다.

④감사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⑤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권위되거나 임원회의에 장기간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에 의견을 청취하여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6) 인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인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인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회장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조속히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이 경우 회원위원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5인 이내의 회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가 90일 이내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5) 회원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7)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무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유기 또는 태만,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법인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②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자격이 상실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 받은 날로부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 자격이 정지되며,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법인은 명예회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전회장으로 하며, 고문은 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으로서 상임하지 아니하는 자와 고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목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가.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용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용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 시에는 회장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
2. 법인의 청산, 해산결의
3. 정관의 개정 및 변경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4조(의결방법) ①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무결된 것으로 한다.

②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투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3조 제1호 중 임원의 해임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서면의결 등) ①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총회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자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여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회의록) ①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최 및 폐회의 연월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회원 및 결석회원
4. 보고사항
5. 회의에 부의된 안건 및 의제
6. 결의사항
7. 발언요지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 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또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세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일시 차입 및 기재에 관한 사항
9. 부회장 및 상임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12.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13.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14. 회원의 청원 및 복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16.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
17. 기타 회장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무결원 것으로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사무국 등

제31조(사무국 등) ①법인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법인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식원의 임면과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국의 사무국장이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31조의2(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설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시 관련 공무원, 교수 및 외부인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촉, 구성, 임부 및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급여) 직원의 급여, 수당, 상여 및 퇴직금, 근로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의2(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회계연도) ①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회장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의 결의를 받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찬조금,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파실금
4.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부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 주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회비) ①법인의 회비는 임회비,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되, 다음과 같다.

1. 임회비라 함은 법인에 가입과 동시에 납입하는 가입비를 말한다.
2. 기본회비라 함은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3. 특별회비라 함은 법인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업 또는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찬조금, 기부금품 및 별도의 회비를 말한다.

②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서

제38조(결산) (1)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수입·지출결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

(2)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39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포상) 회장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무합하는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법인 사업에 공헌한 회원 등에 대하여 법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회원의 징계)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결의로써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2. 부동산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계의 질서를 무란하게 한 경우
3. 회원으로서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를 심히 태만히 한 경우
4. 법인의 조회응답 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㉔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제명처분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회원권리행사 정지처분
3. 당사자에 대한 제고

㉕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정관의 변경

제42조(정관의 변경) ㉑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무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변경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한 때

㉒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11장 보 칙

제43조(규정 및 내규) ①법인은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의2(해산) ①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능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3조의4(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3조의5(선거운동 관여 금지)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6(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4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 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부동산마켓팅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발기인은 본 법인 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설립등기 완료시까지 총회의 권한은 발기인회가 이를 대행하며 승인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변경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변경 사유	비고
<p>제5조(일반사업)</p> <p>1~2 (생략)</p> <p>3.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교육 및 지도</p> <p>4~5 (생략)</p>	<p>제5조(일반사업)</p> <p>1~2 (현행과 같음)</p> <p>3.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교육 및 그 이력관리</p> <p>4~5 (현행과 같음)</p>	조건부 승인	<p>재원조달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재산증빙서류는 교육사업계획서로 제출함</p> <p>[별첨 참조]</p>
<p>제15조(임원의 임기)</p> <p>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5조(임원의 임기)</p> <p>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p> <p>②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p>	조건부 승인	<p>임원의 임기 변경 사항을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임원의 임기에 적용</p>
<p>부 칙</p> <p>이 정관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신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제15조 (임원의 임기)는 개정정관 시행 선임된 임원부터 적용한다.</p>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에 따른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위한 부칙변경	

2018-2021 협회 활동 사진

1. 발기인 총회 ~ 설립허가



▲ 초대 이윤상 회장 취임 ('18.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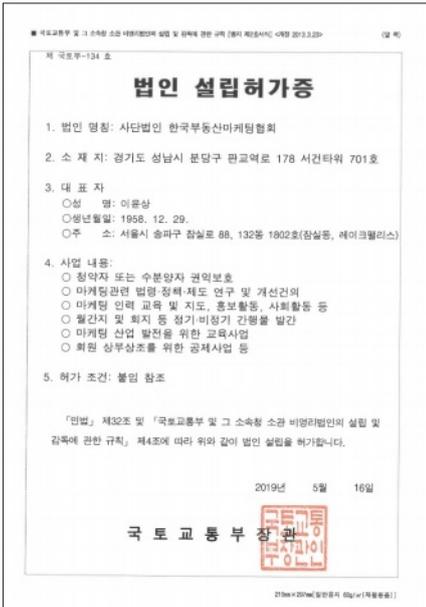
▲ 발기인 총회 ('18.10.16)



▲ 임시 총회 ('19.01.31)



▲ 신년하례식 ('19.01.31)



▲ 설립허가증 ('19.05.16)



▲ 고유번호증

1. 발기인 총회 ~ 설립허가



▲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 인사



▲ 주요 귀빈 인사



▲ 2020년 송년워크샵 ('19.12.04)



3. 총회 및 이사회



▲ 임시총회 ('19.01.31)



▲ 2019년도 총회 ('19.07.24)



▲ 이사진 간담회 ('20.06.09)



▲ 이사회 ('20.02.18)

4. 노무특강 및 골프회 행사사진



▲ 노무특강 ('20.02.06)



▲ 골프유희회 ('20.05.25)

5. 2020-2021 주요행사



▲ 제1회 발기인 연석회의 ('20.10.13)



▲ 디지털정책분과위 ('21.06.15)



▲ 개발협회 MOU ('21.08.30)



▲ 호남지회 현판식 ('21.09.27)



KREPA

Korea Real Estate Parcel out Association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2022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백서
Korea Real Estate Parcel Out Association



-
- 📍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711, 5층(논현동, 건설회관)
 - ☎ 02-3444-0073 📠 02-3446-0019
 - ✉ krep@krep.or.kr
 - 🌐 www.krep.or.kr